

## 1. 개정이유

- 가. 「공무원임용령」 등에서 개정·시행 중 인사제도 개선사항 중 해양경찰청에도 적용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·반영하고, 경찰공무원 승진심사 제도를 정비하여 인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
- 나. 경찰공무원 채용 시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, 체력평가 기준을 변경하여 우수인재를 채용하기 위함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채용시험 시 종합적성검사 결과를 점수화하여 면접점수에 반영하던 것을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개선(안 제30조)
- 나.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대행공무원 지정 시 현행 5인까지의 인원제한을 폐지하여 필요한 경우 다수인을 지정하도록 개선(안 제35조)
- 다.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 자격증 경력가점 기준을 정비하여 분야별로 취득한 자격증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상한 0.5점까지 인정(안 제50조)
- 라. 승진심사 중 제2단계 심사 시 승진심사표를 활용하거나, 인사운영 실정에 맞게 간소화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 방법에 따라 심사하도록 정비(안 제61조)
- 마.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사유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정과제 성과 우수자를 포함하도록 개선(안 제73조)
- 바. 채용시험 체력검사 중 팔굽혀펴기의 경우 남·여 동일자세로 평가하

게 됨에 따라 팔굽혀펴기(女) 평가기준을 변경(안 별표 5)

- 사. 근무성적평정 중 포상실적 평정기준에서 소방청 소속기관장 표창 수상실적을 상점에 추가로 반영하고, 견문제출 평정기준에서 평정의 종류와 배점이 변경됨에 따라 견문점수 평가기준을 정비(안 별표 6)
- 아. 법제처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등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수정, 규정의 명확성·논리성 제고를 위한 전반적 체계 정비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    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    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##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2호 중 “초임보직”을 “최초 보직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경찰공무원 초임보직”을 “경찰공무원의 최초 보직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3항 중 “초임보직”을 “최초 보직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3항 중 “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”를 “인사업무담당자가 참관하여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중 “오·탈자”를 “오타자”로 한다.

제23조제2항제4호 중 “국·공립연구기관”을 “국공립연구기관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2항 중 “선임”을 “선임(先任)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점부터 10점”을 “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,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”으로, “평가하고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”을 “평가하며,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

0점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1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제50조제1항제1호 단서 중 “별표 9에 따른”을 “동일 분야의”로, “유리한 것 하나만을 평정한다”를 “가점이 가장 높은 자격증 하나만을 평정하고, 동일 분야의 구분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제61조제2항제2호 중 “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,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”를 “평가하고”로 하고,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평정성적 중 적성 항목은 승진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를 작성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하거나,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또는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등급을 결정한다.

제71조제2항 중 “찬·반”을 “찬반”으로 한다.

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.

제77조제1항제1호 중 “국·공립병원장”을 “국공립병원장”으로 한다.

제80조제2항 중 “심사하며,”를 “심사하여”로, “가 또는 부”를 “가(可) 또는 부(否)”로 한다.

별표 5의 여자의 팔굽혀펴기(회/60초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        |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    |    |
|---------|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|
| 팔굽혀펴기   | 31 | 30  | 27  | 24  | 21  | 18  | 15  | 12  | 9  | 6  |
| (회/60초) | 이상 | ~28 | ~25 | ~22 | ~19 | ~16 | ~13 | ~10 | ~7 | 이하 |

별표 6 제2호가목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,경찰대학장·경찰인재개발원장·중앙경찰학교장·경찰병원장·지방경찰청장·지방검찰청검사장·군단장(교육사령관 포함)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특별시장, 경찰대학장·경찰인재개발원장·중앙경찰학교장·경찰병원장·지방경찰청장, 지방검찰청검사장, 군단장(교육사령관 포함), 중앙소방학교장·중앙119구조본부장·국립소방연구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중 “101단장·기동단장·사단장·경찰서장”을 “101단장, 기동단장, 사단장, 경찰서장, 소방서장”으로 하며, 같은 목 중 “지방검찰청지청장·여단장”을 “지방검찰청지청장, 여단장”으로 하고, 같은 목 중 “합정장·연대장”을 “합정장, 연대장”으로 하며, 같은 표 별표 6 제4호 평정의 기본점수(2점)배점란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란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정보·보안 검직 외근근무자: 5건

별표 6 제4호 평정의 능력점수(1점)의 배점란 제2호의 특보·판단란 중

“특보·판단”을 “특보”로 하고, 같은 란의 기록·조사란 중 “기록·조사”를 “조사”로 하며, 같은 호에 정보·보안 검직 외근근무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정보·보안 검직<br>외근근무자 | 0.083 | 0.083 | 0.042 | 0.021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
별표 6 제4호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수사첩보의 경우 별도의 구분을 따른다.

별표 6 제4호 비고 제4호가목 중 “치안상”을 “국가안보, 안전에”로, “중요시책에 관한 특별 보고자료”를 “주요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견문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 마목 및 바목을 각각 삭제한다.

나. 중보: 정책 자료나 중요 사건·행사, 그 밖에 관내 특별한 상황 등을 종합한 견문

다. 통보: 해양경찰청 업무 주관부서에서 처리하거나, 업무와 관련 있는 다른 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해 주는 견문

라. 조사: 내용의 재확인 및 출처의 신빙성을 보장하여 정보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견문

부령 제416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칙에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5의 개정

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표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6조(인사기록의 작성)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.<br>1. (생략)<br>2.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:<br><u>초임보직</u> 기관의 장<br>②·③ (생략) | 제16조(인사기록의 작성) ① ----<br>-----<br>-----.<br>1. (현행과 같음)<br>2. -----<br>-----<br>-----<br><u>최초 보직</u> -----<br>②·③ (현행과 같음) |
| 제17조(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) ① 인사기록(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·유지·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)은 <u>경찰공무원 초임보직</u>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.<br>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7조(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) ① -----<br>-----<br>----- <u>경찰공무원의 최초 보직</u>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8조(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) ①·② (생략)<br>③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인사기록(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·유지·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)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<u>초임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8조(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최초 보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내야 한다.

제20조(인사기록카드의 열람) ①

· ② (생략)

③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사업무담당자의 참관 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해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21조(인사기록의 수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수정할 수 있다.

1. 오·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3조(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) ① (생략)

②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할 때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이 경우 연구경력에 다음 각 호의 어느

직 -----  
----.

제20조(인사기록카드의 열람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인사업무담당자가 참관하여 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인사기록의 수정) ① ----

-----  
-----  
----.

1. 오탈자 -----  
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외국의 국·공립연구기관(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)에서의 연구경력

③·④ (생략)

제25조(정규임용심사위원회) ① (생략)

② 위원은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자로 임명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 또는 선임인 경찰공무원이 된다.

③·④ (생략)

제30조(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) ① 영 제25조제1항 제7호(영 제2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면접시험(이하 “면접시험”이라 한다)은 25점 만점으로 하되, 제1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고,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

-----  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 국공립연구기관-----  
-----  
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정규임용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선임(先任)-----  
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제2호 및 제3호  
의 평가요소에 대한 참고자료로  
활용하고, 제2호 및 제3호의 평

절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.

1. ~ 4. (생략)

② · ③ (생략)

제35조(업무대행 경찰공무원) ①  
(생략)

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. 다만,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넘을 수 없다.

제50조(가점 평정) ① 영 제58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.

1.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. 다만, 별표 9에 따른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

가요소는 1점부터 10점--- 평  
가하며,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  
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  
라 0점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업무대행 경찰공무원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실제로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으로 1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업무특성상 여러 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인원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제50조(가점 평정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. ----- 동일 분  
야의 -----  
-----

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 
을 평정한다.

2. 3. (생 략)

② ~ ④ (생 략)

제61조(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)

① (생 략)

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 
방법으로 하되, 전(前) 단계의  
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  
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  
한다.

1. (생 략)

2.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  
사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 
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·우·  
양·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 
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 
승진심사표에 적고, 위원별 평  
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  
을 집계하여 높은 점수를 받  
은 사람 순서로 별지 제21호  
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 
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  
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

----- 가점이 가장 높은  
자격증 하나만을 평정하고, 동  
일 분야의 구분은 해양경찰청  
장이 별도로 정한다.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61조(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평가하고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제3단계 심사에 부친다. <후  
단 신설>

3. (생략)

제71조(특별승진심사의 절차) ①  
(생략)

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·반  
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  
은 사람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  
정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73조(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 
근무기간) ① 영 제93조제1항  
에 따른 대우공무원(이하 “대우  
공무원”이라 한다)으로 선발되  
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 
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 
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  
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  
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

-----. 이 경  
우 평정성적 중 적성 항목은  
승진심사위원별로 별지 제20  
호서식의 승진심사표를 작성  
하여 개인별로 점수를 집계하  
거나,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  
의 또는 무기명 투표로 과반  
수의 찬성을 얻어 등급을 결  
정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
제71조(특별승진심사의 절차) ①  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찬반 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73조(대우공무원의 선발을 위한  
근무기간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해야 한다. 다만,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까지 줄일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77조(정년연장 신청)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계급정년의 연장(이하 “정년연장”이라 한다)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정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경찰병원장 또는 국·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

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80조(심사기준 및 방법 등) ① (생략)

② 영 제95조제3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(이하 “정년연장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는 정년

----- . 다만,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내거나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7조(정년연장 신청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국공립병원장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0조(심사기준 및 방법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

연장 신청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,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.

③ · ④ (생략)

## <신 설>

## <신 설>

-----

----- 심사

하여 ----- 가(可) 또는 부

(否)---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6의 개정규정  
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받은 표  
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